

24년 세법개정안

지난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세제개편안은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 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별 세제개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법령 개정안이며, 국회 심의 등 남은 입법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법인세법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유예기간 확대

현행 법인세법 제76조의 22에서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 받도록 유예기간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세제개편안에서는 유예기간을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5년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

현행 법인세법 제76조의 22에서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별하고,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서는 연결집단이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연결법인에 적용되는 납세방식을 더욱 합리화하였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구개발용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과 마찬가지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제개편안에서는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3년으로 단축하여 상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현행 법인세법 제46조의 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에서는 적격분할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분할대가를 전액(분할합병의 경우 80% 이상)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교부하고,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서는 동 요건 적용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관련 적격분할 요건을 합리화하고자 지분비율 산정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소득법·법인세법)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투자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신청함에 있어 공모국외투자기구와 달리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실질귀속자별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서는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 시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모국의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국외투자기구를 실질 귀속자로 간주하여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 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공모국외투자기구와 사모국외투자기구 모두 원천징수 면제 대상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현행과 같이 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정청구 절차 신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투자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직

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만 가능합니다. 세제개편안에서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 ✓ 청구자: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또는 소득지급자
- ✓ 청구기한: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 ✓필요서류: 경정청구서, 비과세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

➤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액을 최대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서는 이월공제 대상 미공제 배당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과 배당금액(당기분과 전기 미공제 이월분)의 합계액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

II.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제24조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등과 관련된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특례의(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24년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이 27년말로 연장 하였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서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증가 금액(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투자액)에 대하여 기존 추가공제율(3%~4%) 10%로 크게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 ✓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현행]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3%,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4%
[개정] 일괄 10%

➤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중견기업 범위 조정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중견기업의 규모 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추가 되고, 중견기업의 규모 요건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부동산임대업’ 추가
- ✓ 중견기업 규모기준을 업종별로 조정
[현행]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R&D세액공제의 경우 5,000억원) 미만일 것
[개정]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금액의 3배(R&D세액공제의 경우 5배) 미만일 것

기준금액(억원)	업종
1,500	의류제조, 1 차금속제조 등
1,000	식품제조, 건설, 도소매 등
800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600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
400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 요건 중 규모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사업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세제혜택 강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현행]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개정]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은 7년)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제24조에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낮아지는 경우 그 세액공제율 축소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도록 공제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공제율 점감구조가 적용 될 예정입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20(*1)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25(*2)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35(*3)	40	최대 10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7.5(*1)	10	10
신성장·원천기술	3	6,9(*2)	12	
국가전략기술	15	15,20(*3)	25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 [공통]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코스닥상장 우대 공제율 폐지에 관한 경과규정)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이 지출한 비용은 종전 규정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지원대상 확대하고 유형별 지원방식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추가공제규정을 기본공제와 통합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확대 및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

- 1) 고용지원대상 확대: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 2)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 계속고용 공제액 상향+ 탄력고용 정률지원 도입

구 분		공제규모(단위: 만원, %)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계속 고용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2,200	2,400	1,200	400
	그 외 계속고용	1,300	1,500	700	-
탄력 고용	인건비증가율 3% ~ 20%	증가분의 20%		증가분의 10%	-
	인건비증가율 20% 이상	20% 초과 증가분의 40%	20% 초과 증가분의 20%		

- ✓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
 - 1)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1년 추가 공제(사후관리 폐지)
 - 2)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기본공제와 통합
 - 3) 최소 고용증가 기준 신설: 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
-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024년 12월 31일 이전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 되고,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 ✓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 [대상]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부동산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
 - [요건]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 2.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 [과세특례]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 주주환원금액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1.05] × (1 - 지배주주등 지분비율)
 - [공제율] 5%
 -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한도)
 -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대상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직전3년평균 대비 증가분 + 직전3년평균 주주환원금액×10%/직전3년평균 주주환원금액)
 [과세방식] 원천징수 세율 14 → 9%로 인하,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 선택 허용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
-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금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0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지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공장 및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감면요건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 ✓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
 [현행]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5년 100% + 2년 50%
 [개정]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5년 100% + 2년 50%
- ✓ **감면제외 대상 관련 단서 신설(조특법 §63, §63의2, 조특령 §60, §60의2)**
 이전 전 10년 내에 감면을 적용 받은 기업은 제외
- ✓ **업종요건 합리화(조특법 §63, §63의2, 조특령 §60, §60의2)**
 [현행] 이전 전·후 동일한 업종 영위
 [개정] 이전 전 2년(공장을 이전한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공장을 철거·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개인·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범위제한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 제외대상에 아래 법인을 추가
 1. 부동산 임대업 영위법인
 2.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1)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 (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투자완료 후 2년내 자산 처분 또는 임대 시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지원제도 합리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임대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처분·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중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의 적용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
- ✓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
- 2024년 12월 31일 적용기한 종료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의 개념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 개념·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비할 예정입니다.

- ✓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

1) 연구개발의 정의

[현행]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개정]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창의적인 활동

2)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
추가

III. 국제조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54조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면제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개정안
- 단기체류 외국인 거주자	- 단기체류 외국인 거주자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 인 재외국민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 불복·소송·상호합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계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 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인하

현행 국조법 시행령 제147조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누진율을 적용한 과태료를 20억원을 한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는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하여 과태료율을 10%로 단일화하고 과태료 한도 역시 10억원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현행	개정안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의 10%	해당 금액의 10% (10억원 한도)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억원 + 20억 초과금액의 15%	
50억원 초과: 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20% (20억원 한도)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화

현행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2, 법인세법 제98조의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면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의무 면제 대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은 국내원천소득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의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

현행 국조법 제6조는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고, 과세관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경정청구 시 제출자료에 정상가격 입증서류(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를 추가하고, 과세관청의 경정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제출자료가 미비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요구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조정

현행 국조법 제58조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료의 제출·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는 역외세원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해당 요구기간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출·보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출·보완 요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현행 국조법 제36조 내지 제38조는 금융정보 자동정보교환체계를 규정하면서 금융거래회사 등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가입국 국세청 간에 해당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개편안에는 OECD 암호화자산 정보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교환 정보에 암호화자산 정보를, 정보수집 주체에 암호화자산사업자를, 실사 대상에 암호화자산거래 상대방을 추가하였습니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교환 정보 요청·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2026년 1월 1일 이후 금융거래회사 등이 실사하는 분부터 적용
- 실사에 대한 경과규정은 2026년 1월 1일 현재 금융거래 등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보완

금번 세계개편안에서는 2022년 도입(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조항은 대부분 기존의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기존에 발표된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의 내용 중 국내 법령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V. 상속세 및 증여세법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3항에서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평가가액에 20%를 가산하도록 하며,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에 대해 일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개편안에서는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자 이와 같은 할증평가 규정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V. 국세기본법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4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금액의 20%로 정하되, 건당 50만원 이하, 인당 연 200만원 이하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서는 현금영수증 신고포상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를 건당 25만원 이하, 인당 연 1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1항에서는 이미 신고·결정된 세액 등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세제개편안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하였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정청구에 관한 경과규정)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정청구 허용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현행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과소신고의 경우 5년, 무신고의 경우 7년이며,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을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서는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여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에 대해 이월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납세자는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해당 특례의 적용시점까지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1항에서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15일 전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서는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는 것으로 사전통지 기간을 조정하였으며, 예외적으로 불복 청구 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VI. 별첨: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금번 국조법 개정안에는 **일반적 적용면제, 소득산입보완규칙 전환기 적용면제(UTPR Safe Harbour)**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외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명칭 및 정의 명확화, 순글로벌최저한세 결손금액의 15%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하는 결손 취급 특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	비고
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그룹)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해 서로 연관된 기업(연결기업 및 일부 연결제외기업(매각예정기업 등) 포함 <input type="checkbox"/> (구성기업)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연결기업 및 일부 연결제외기업(매각예정기업 등)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와 유사하게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 하는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소재지국 과세권이 인정될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이외의 경우: 본점 소재지국에서 역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명칭 및 정의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명칭 변경 및 정의 명확화: 외부주주의 직·간접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구성기업
조정대상조세 계산 관련 결손취급 특례 신설	<input type="checkbox"/> (특례) 신고구성기업은 최초적용연도에 결손취급 특례(총이연법인세 조정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15%)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 선택 허용 · 단, 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은 제외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법 보완	<input type="checkbox"/> 원칙 ① 법정배분: 모기업의 직·간접 보유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 ② 지정배분: 구성기업간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구성기업에 배분 · 다만, 직전사업연도까지 지정배분된 추가세액 미납 시 아래에 따라 배분 - 최종모기업이 국내 소재: 최종모기업에 배분 - 최종모기업이 국내 미소재: 법정배분 적용
최소적용제외 특례의 예외 신설	<input type="checkbox"/> 최소적용제외 특례: 국가 내 구성기업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1천만 유로 및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금액 평균이 최소기준(1백만 유로)에 미달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예외) 글로벌최저한세신고 후 신고후조정 등 사유로 사후적으로 특례요건 충족 여부가 변경(신고 당시 특례요건 충족 국가→미충족하게

	<p>되거나 신고 당시 특례요건 미충족 국가→충족하게 되는 경우 모두 포함되는 경우) 특례 적용 배제</p>
<p>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 확대</p>	<p><input type="checkbox"/> (추가) 배당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최종모기업과 동일국가에 소재하고 배당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구성기업) 또는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고정사업장 또는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인 구성기업)의 고정사업장</p> <p><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비율(*)만큼 대상조세도 차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배당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차감 금액 ÷(글로벌최저한세소득-순조세비용) · (*2) 투과기업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금액÷글로벌최저한세소득
<p>전환기 적용면제의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p>	<p><input type="checkbox"/> 일반적 적용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면제요건(소액, 실효세율 15% 이상 또는 초과이익 요건) 충족 · (효과)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p><input type="checkbox"/> 소득산입보완규칙 전환기 적용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최종모기업 소재국의 명목세율이 20% 이상 · (효과) 전환기('25.12.31. 이전 개시하고 '26.12.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p>신고기한 특례 신설</p>	<p><input type="checkbox"/> 신고기한 특례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6월 30일 이전 신고기한 도래 시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

본 세제개편안은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 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ey Contacts

If you have any inquiri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the key contacts of KPMG Korea listed below:

Tax Team Specialized in International Tax/Foreign Invested Company		
Oh, Sang Bum	sangbumoh@kr.kpmg.com	02-2112-0721
Lee, Sung Wook	sungwooklee@kr.kpmg.com	02-2112-0946
Kim, Dong Hoon	dkim@kr.kpmg.com	02-2112-0938
Lee, Sang Moo	sangmoolee@kr.kpmg.com	02-2112-7899
Suh, Yu Jin	yujinsuh@kr.kpmg.com	02-2112-0930
Kim, Jung Eun	jungeunkim@kr.kpmg.com	02-2112-0283
Cho, Sang Hyun	sanghyuncho@kr.kpmg.com	02-2112-7687
Song, Hyung Woo	hyungwoosong@kr.kpmg.com	02-2112-0275
Min, Woo Kee	wmin@kr.kpmg.com	02-2112-6886
Park, Sang Hoon	spark17@kr.kpmg.com	02-2112-6672
Lee, Jin Wook	jinwooklee@kr.kpmg.com	02-2112-3476
Lee, Chang Hoon	changhoonlee@kr.kpmg.com	02-2112-6815
Kang, Sung Won	kang22@kr.kpmg.com	02-2112-6771
Baik, Chun Wook	cbaik2@kr.kpmg.com	02-2112-3339

[Privacy](#) | [Legal](#) | [Unsubscribe](#)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